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2-131 관련
----------	-----------

제안년월일: 2022년 12월 8일
제안자: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는 약칭 사용 및 조문과 용어 수정
- 나. 필요한 조문 추가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2. 수정 주요내용

- 가. ‘사업자의 책무’ 조항 신설(안 제4조)
- 나.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조항 통합(안 제10조)
 - 원안의 제8조와 제10조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
- 다. ‘의회 보고’ 조항 신설(안 제12조)
- 라.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조항 삭제(안 제23조)
- 마.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기타사항

- 가.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수정):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이라 한다)는”을 “구는”으로 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의 수립 등”을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의 수립 등

제7조(중전의 제6조)제2항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마포구”를 “제8조제1항에 따른 마포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감축목표”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응대책”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추진상황 점검)”을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적응대책”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호 중 “탄소중립비전”을 “마포구 탄소중립 비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마포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적응대책”으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을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사항과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앞에 “제3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6조(중전의 제15조) 제1항 후단 중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 중 “구청장이”를 “구가”로 한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0조(중전의 제19조)제2항 중 “시행령 제60조제7항”을 “영 제60조제7항”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u>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u> 및 같은 법 <u>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u>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 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u> ----- ----- <u>시행령</u> ----- ----- ----- ----- ----- ----- ---
제3조(구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 이라 한다)</u> 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u>구는</u>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

제4조·제5조 (생략)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의 수립 등
<신설>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생략)
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마포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마포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6조 (현행 제4조 및 제5조와 같음)

<삭제>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의 수립 등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8조제1항에
따른 마포구 -----

-----.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 6. (생략)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 6. (생략)

③ (생략)

제8조(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

3. ~ 6. (현행과 같음)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

② -----.

1. (현행과 같음)

2. 감축목표 -----

3.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제>

다.

제9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① (생략)

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③ (생략)

제10조(추진상황 점검) <신설>

구청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11조(주요정책의 심의 등) 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생략)

제9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적응대책 -----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 제9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

제11조(주요정책의 심의 등) ----

-----.

1. (현행과 같음)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6. 제9조에 따른 마포구 기후위
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
이라 한다)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생략)

<신설>

제3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신설>

제12조 ~ 제14조 (생략)

제15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
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
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
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2. 마포구 탄소중립 비전 -----

3. ~ 5. (현행과 같음)

6. ----- 적응대책-----

7. (현행과 같음)

제12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기본
계획의 수립·변경 사항과 추진
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서울특
별시 마포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으로 정한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제3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
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16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제18조 (생략)

제4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신설>

제19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 연대 참여)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시행령

 -----.

 ----- 모든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가

 -----.

제18조·제19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삭제>

제4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 연대 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60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
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 제22조 (생략)

제23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의 특성에 따른 기
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포구 기후대응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
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설치 및 운
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조제7항-----

---.

제21조 ~ 제23조 (현행 제20조부
터 제22조까지와 같음)

<삭제>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의 수립 등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마포구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마포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마포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마포구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 · 홍보
 5. 녹색기술 · 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마포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해야 한다.

- 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의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 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11조(주요정책의 심의 등) 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마포구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사항과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3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지역 물관리 사업)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